

학위수여 규정 개요

석사 및 박사학위는 대학원 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 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심사 및 구술고사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한다.

1. 학위논문 제출자격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

가. 응시자격

- (1) 외국어 시험: 1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.
- (2) 종합시험
 - 석 사: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.
 - 박 사: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.
 - 석·박통합과정: 4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30학점(석사과정포함) 이상 취득한 자.

나. 시험실시 횟수

매학기 초 1회 실시

다. 시험과목

- (1) 박사과정, 석·박통합과정 : 전공과목(제2외국어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하지 않음)
- (2) 석사과정 : 전공과목(제2외국어는 2010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지 않음)

※ 외국인 학생은 영어, 한국어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함.

단, 영어가 모국어인 경우는 한국어만 응시 가능하며, 한국어와 한국문화(국어국문학과, 990.804 or 990.805)를 이수한 경우 한국어 시험 대체 가능함.

- (3) 석·박사과정 공통 : 영어는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자격인정제도로 대체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대상자(기 합격처리인정을 받지 못한 자)는 반드시 학위논문심사서류 제출 전(1학기는 4월 초, 2학기는 10월 초)까지 TEPS·TOEFL에 응시하여 소속 대학(원)에서 정한 기준점수를 취득

종 류	학 번	
	1999학번 이전	2000학번 이후 (지식재산전공 포함)
TEPS	501점	601점
TOEFL(IBT)	71점	86점

라. 시험 합격기준

교과과목별 만점을 100점으로 하고 매 과목 석사과정은 60점 이상을, 박사과정은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되 불합격된 과목에 대하여는 다시 응시할 수 있다.

2. 논문 지도교수 선정

- 가. 석·박사과정의 지도교수 선정은 입학 후 2개 학기 이내에 한다. 다만, 논문 지도교수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 후 3개월(1개학기) 이내에 선정한다.

3. 논문 제출자격

가. 석사과정

교과학점 24학점 이상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,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.

나. 박사과정

교과학점 36학점 이상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,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.

다. 석·박통합과정

교과학점 60학점(석사학점 포함) 이상 당해 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어야 하고,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.

4. 학위논문 제출기한

석사학위 논문 제출기한은 과정수료 후 4년, 박사학위 논문 제출기한은 과정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. 다만, 과정수료자가 그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.

※ 군복무기간(특례보충역 포함), 임신·출산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.